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Why the states has no housework policy? :
The political issue on housework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문숙재
강사 윤소영

Consumer Studies & Family Resourc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Sook-jae, Moon

Lecturer : So-young, Yoon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가사노동 정책 프로그램 |
| II.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 | V. 가사노동 정책의 방향 |
| III.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논의의 필요성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paper explored the public issue on housework, analyzed the policy and the law associated housework, and developed the theoretical model for its political program. This idea is dependent that the policy has priority over change of the social ideology. That policy contains a campaign and a education to be aimed to share of housework in order to make responsibility of men as well as women on family and work. Also, it contains economic value estimates to quantify and value the non-wage work(childcaring, homemaking etc.) in order to confirm its productive activity. It would assume the lawful form as like a social security or a pension. For example, the Family Rights Law, Tax Law, and Social Security Act have to be reflected on the value of housework and to be secured the social status of provider. After all, this work was useful to improve a wage and a social status of all women.

As consistent policy and operation associated housework are poor in Korea, it is difficult to develop theoretical model on this theme. On the range, a political proposal on housework would be bound by family policy(evaluation of housework)

and women's labor policy(housework support). So the policy intend to secure a family life, to improve welfare of women, and to equilibrate the family and the work.

I . 문제제기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공기나 물의 중요성이 평상시에는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나 생산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떠한 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성인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사노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사노동은 일상생활에서 빛나지 않는 일, 특별히 도전적이거나 보람이 없는 일, 혹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지위가 낮은 일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은 가사노동을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더욱이 가사노동은 그 가치에 대한 인정과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평가상의 이중기준이 적용되므로, 주부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남편의 지위에 따라 이차적인 지위를 갖게되며, 사회적·경제적·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문숙재·정영금, 1991). 따라서 주부 스스로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가사노동을 기피하며,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직업을 갖겠다는 경향도 나타낸다(Ferree, 1983).

이러한 현상은 가사노동을 사적인 영역의 개별적인 노동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가사노동이 생산적인 노동이고 그 진정한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별 가정의 역할관계나 성역할의식에만 한정짓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더이상 주부의 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나 가치인식의 문제는 개별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부가 상해나 재해를 당할 경우 피해보상 문제라든가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개별 가족의 가사노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상관없이 사회적·제도적으로 인식되는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각 정당에서 지향하는 정치적인 이념가운데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주부의 가사노

동에 대한 가치와 그 평가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가사노동의 문제를 공적인 관심사로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때 정책이란 특정 목표를 향한 행동을 결정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책에서는 사회적 문제나 요구가 개인의 책임 영역이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행동계획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특별한 문제나 요구를 '공공의 관심'으로 끌어내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다루고, 어떤 행위자들이 인지한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요청하는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실제적인 행위자가 없거나, 문제의 인지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책 이슈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정책적인 이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가사노동은 가정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노동으로서 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가족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가족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별 가정이 스스로 해결하는 단계를 벗어나 사회와 국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가사노동을 진정한 노동으로 인식하고 그 생산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선행한다. 즉 가사노동의 어떠한 측면을 공적인 대상으로 언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가사노동시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평가의 필요성과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는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

구가 발표되고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은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요구 이후에 보다 구체화된다. 여기에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인 제안과,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사회적·법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나 연구들이 사회적이고 법적인 평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론과 현실사이의 커다란 격차를 실감하게 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학문적인 성과를 현재제하의 법제나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가사노동의 논의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이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정책적 요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가사노동 정책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사노동의 생산성 및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사노동의 개념과 가정주부의 지위의 관계를 찾아본다.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안 및 정책을 통해 가사노동에 대해서 공적인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정책과 여성노동정책의 범위내에서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조망해 본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주부인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가사노동을 담당함으로써 법이나 정책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복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II.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

노동이란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이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때 가사노동은 가족원들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며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정내에서 수행되는 정신적·육체적 활동으로서(문숙재, 1991), 하나의 생산적이고 가치있는 노동임에 틀림없다. 물론 가사노동이 시장노동처럼 임금이 지

불되거나 시장상품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임금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이며, 결과적으로는 교환가치와 잉여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찌기 산업화의 발달은 작업장소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킨 동시에 노동과 임금노동을 명백하게 일치시켰다.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노동은 더이상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게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비노동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적 용역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국민생산에 심각한 편견을 갖게되는 한 원인이 된다”(Scott, 1978). 예를들어 현재의 통계방식 하에서는 여성이 가정을 떠나 직장을 구할때 그 것은 단순히 노동형태상의 전이가 아니라 GNP의 증가로 계산된다. 최근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GNP가 실제에 있어서 훨씬 빨리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었다. 반대로 GNP에서 가사노동을 제외한 결과로, 경제학자들은 실제 생산노동의 총량을 훨씬 과소평가해온 셈이 된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직접적인 화폐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가사노동에 대해 특별한 가정을 설정하고 그 화폐가치를 추정하여 가치를 논하였다. 한가지 가능한 논의는 가사노동 생산자가 동일한 시간량을 임금노동에 투입한다면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을 통해 그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때 개인과 가족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자신의 노동시간을 투자한다는 것과, 시장에서의 취업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은 동일한 가사노동의 가치가 주부의 특성에 의거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편견을 가져온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설정과 관련된 또다른 논의는 특정 작업에 투입된 시간수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각 작업이 시장에서 수행될때의 가치를 더해서 전체의 노동가치를 산출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이미 잘 알려진대로 “시장대체비용법”으로 불리운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방법은 중복시간¹⁾의 부분을 포함하며, 단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방법이 경제적인 가치기준에 의한다면,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은 가사노동의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사회적인 특성을 갖는 생산으로서 가사노동은 가르치고 배우는 기술의 형성, 감정이나 태도의 전달, 가치의 강화, 문화적 전통의 전달, 정보의 전달과 격려 등을 통해 가족원들의 인적속성을 발전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Rettig, 1987). 따라서 사회에서 가족의 지위를 유지·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가사노동은 개개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며 전체 사회의 복지 실현에도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하나의 노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며, '여성이 맡은 가정일'로 생각하는 것에 기인한다. '여성이 맡은 가정일'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 천직을 수행하는 일은 힘과 노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손덕수, 1985). 이러한 생각은 여성과 가사노동의 개념을 일체화하면서, 여성 특히 가정주부의 지위를 가사노동의 무급의 특성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에 대해 일부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지위향상이 곧 가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날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증대가 여성의 지위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평가는 여성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중된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참여나 사회전반에서의 두드러진 참여증가 현상이 여성들의 지위나 상대적인 불평등을 어느정도 완화시켜 주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아직도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가사작업의 성격이 강한 일에 종사한다던가, 저임금과 직종격리의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가사노동에 대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임금으로 지불하자는 주장(Vogel, 1983)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많은 여성해방론자들은 그 발상이 가사는 곧 '여성의 일'이라는 연상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성적 역할을 철폐하

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을 보다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김정선, 1992). 한편, 완충적인 제안으로 결혼관계가 파탄되지만 않는다면 급여가 실제로 반드시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신인령, 1983).

이러한 주장은 가사노동의 생산적 측면을 이해하고 공식경제의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우로, 가사노동을 임금노동과 대비되고 비생산적인 일로 이해하는 경우와 다른 입장이다. 즉 후자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사노동의 사회화나 공동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가사노동을 정책적으로 사회화 또는 공동화시킨 사회주의 국가나 키부츠 농장의 경우 여성들이 개별 가정내 가사노동으로 부터는 해방되었으나 사회적으로 확대된 가사노동 형태의 직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거나 낮은 가치를 지닌 그 노동으로부터 그 종사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송혜림, 1993).

따라서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사노동을 될 수 있는 한 줄이고 여성들을 사회노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남성과 여성의 모두 함께 하는 노동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즉 가사노동의 가치가 계속 낮게 평가되는 한 가사노동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일이며, 더 많은 책임을 여성들이 가져야된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III.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논의의 필요성

1. 가사노동의 사적 특성

인간행동은 독특한 목적을 가진 두가지 영역으로 특징지워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인간행동의 한가지 영역은 인간적 궁핍의 영역이며, 또 다른 영역은 그 일차적 목표가 사람들과 자원을 통제하는 것으로 생존을 위한 부수적인 영역이다. 이때 전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식·주, 인간관계, 인간발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영역으로, 원초적이며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며, 후자의 공적이고 가시적인 영역과는 대조적 성향을 나타낸다 (Thompson, 1988).

인간행동의 두가지 체계는 공적영역-사적영역의 이분적 체계와 연결되면서, 가정과 가정밖, 여성과 남성, 휴식과 노동 등의 개념들과 관련된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이분체계(생산/재생산)는 혼동되어왔던 공적인 개념과 사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생산체계와 노동의 분리는 남녀의 성적인 분리와 함께 그 정도를 심화시켰다(손덕수, 1985). 이러한 이분체계는 남성은 가정밖의 ‘생산자’, 그리고 여성은 가정내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당연하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여성과 가정은 하나의 맥락으로 인식되며, 그와 동시에 노동의 분리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모든 개념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존재하게 되었고, 생산과 소비, 직장과 가정,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 등을 한 맥락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나, 자본주의적 가정에 대한 어떠한 식의 분석에도 당연한 것으로 적용된다 (Turnaturi, 1987). 따라서 공적영역-사적영역이라는 이분적인 사고는 자본주의의 경제체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제와 함께 성별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Lopata, 1993).

이와같이 가사노동을 사적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사노동이 생산적인 노동이고 그 진정한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별 가정의 역할관계나 성역할의식에만 국한시킨다. 즉 가사노동을 둘러싼 모든 논쟁을 개별 가정 영역내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이끌게 된다. 예를들어 가사노동을 사적인 노동으로 인식한 구조기능주의자들에 따르면 핵가족과 여성의 어머니 역할은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성과 가정은 사적영역과 연관되고 남성과 정치 및 경제는 공적영역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순기능적인 결과를 위해 가정은 가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여러 가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즉 가사노동의 사적인 성격을 주장하면서 가사노동이 가지는 공적인 특성과 공적영역으로의 확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가사노동이 경시되어온 큰 이유는 가사노동이 가진 사적특성과 무상적 특성에 의해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산적 노동이 아닌 것으로 인식된 것에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문제는 더이상 개별적인 가정안에서 평가받고 인정받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공적관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가사노동의 공적특성을 인정해야 가능하다.

2. 가사노동의 공적 특성

가사노동의 공적 특성은 일부 여권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된 가사노동의 공적 생산화의 노력을 통해 인정된 바 있다. 특히 Benston(1978)은 지금까지 가정에서 행해지던 일을 공적 생산으로 바꾸는 것, 즉 사회가 집안일과 양육의 사회화를 향해 변화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재생산노동으로의 가사노동 개념이 여성의 낮은 지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낮은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 국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공동화, 집단화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생산영역에서만 공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노동의 공동화는 개별 여성의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루어졌지만 여성의 가사노동 자체로 부터의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생산성에 근거하여 그 가치를 공적영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은 기존의 여권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즉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공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이후의 노동분리를 전체로 한 공적영역-사적영역이라는 이분적인 사고 체계를 벗어나야만 한다.

가정이 수행했던 기능들이 가정밖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공적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 본래 가정의 기능이었다는 점, 가사노동이 노동력을 생산하는 노동이라는 점, 가사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가정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모두 사적이라는 사고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공간적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가사노동이 사회적 노동과의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 특히 현대국가는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에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 등(문숙재·윤소영, 1996)의 근거는 가사노동이 공적인 특성을 가진 노동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현대 국가는 국민의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활동에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내외정책을 추진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각종 생활 장애를 해소하고 경제분배의 불평등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가정과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가사노동은 더이상 은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제 공적 부문과 사적부문간의 경계는 더 이상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가사노동의 공적영역으로의 확대, 한예로 정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가사노동의 사적논의는 가사노동에 대한 생산성 논의나 경제적 평가의 측정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이론적인 주장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노동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모든 주장과 이론들을 생활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가사노동 정책 프로그램

가사노동을 이슈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범위는 가사노동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과 그 행동계획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구는 구체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행동지침과, 가정내에서 주부가 전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을 지원하려는 행동지침으로 표현된다.

이때 가사노동의 행동지침은 구체적으로 가족정책과 여성노동정책이라는 범위로 설정된다. 가사노동은 가정이라는 공간과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통해 실행되며, 가족의 형성과 해체 등 가정의 안정과 가정생활의 보장을 꾀하는 가족정책의 범위안에 설정된다. 또한 여성의 가족과 일에 대한 갈등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주부 개인의 노동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노동정책도 요구된다.

1. 가사노동 정책의 범위

가족정책의 목표나 방향점은 오늘날의 가족이 위기인가, 아니면 변화인가의 논쟁을 통해 가족의 부양관계의 와해나 가정파괴 현상, 그리고 가족생활의 구조, 기능 및 가치의 상실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공세권, 1996).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가족정책은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결손예방은 물론 결손보호 등 다각적인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가족형태 가운데 이상적인 모습을 선택하고 이를 기본으로 가족에 관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전제한다. 이러한 모습은 법적 가족상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현행 헌법에서 나타나는 가족 또는 가족정책의 이상은 “모든 가족은 법률상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제10조, 제11조),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국가의 보장을 받으며 모성과 보건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6조), “여자의 근로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연소자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제32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가지며,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리의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질병·노령 등으

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등의 조항에서 잘 나타난다(박병호, 1995).

특히 우리 헌법은 제 36조 1항을 통해서 가족을 사회발전의 최소단위로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호와 육성의 과제를 선언하고 있다(허 영, 1983).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설정법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설정법은 가족법이다. 가족법은 가족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사회적 과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사회적 관점에서 조정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부양관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던가 이혼 배우자의 재산적 지위를 재조정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적 조정을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해결능력의 범위를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체계로부터 가족관계에 대한 변화를 가할 수 없다(전광석, 1995).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인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이 외부와의 접촉을 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원칙의 조정을 통해서 혹은 가족 그 자체를 직접 보호하는 법영역을 창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되는 것은 사회보장법이다. 사회보장법은 개인의 생활수요를 국가의 직접적인 급여를 통해서 보호하는 과제를 갖는다. 그리고 이때 사회보장법은 가족의 부양기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법은 필연적으로 가족정책과 직접적 혹은 적어도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법에는 가족구성원에게 발생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제가 부과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법과 사회보장법, 그리고 그밖의 영역이 긴밀한 상호기능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초위에서 효율적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예컨대 가족법과 사회보장법, 세법과 사회보장법, 가족법과 노동법의 상호기능관계에서 가족보호의 요청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한

다.

한편, ‘남성은 일’(시장노동), ‘여성은 가정’(가사노동)으로 집약되어 표현되는 성별에 따른 역할분업론이나 기능특성론은 오랫동안 여성의 고유한 역할이나 활동영역을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지우고 여성의 경제나 사회활동의 참가를 막는 이념적 기초가 되어 왔으며 나아가 여성은 남성에 의한 생계의존자로서 규정하였다. 그리고 육아나 가사노동은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로서 국가나 사회가 개입, 보호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가진 공적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성별역할분업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정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 직종과 직급,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을 성별에 따라 분리시켜 여성집단에 대한 고용상의 불평등과 불이익을 초래하도록 작용해왔다. 특히 성별역할분업론은 남녀가 맞벌이 부부라도 여성만이 가정책임과 직장책임의 이중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이 현상은 국가마다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세계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초가 되어 왔다(김엘립, 1993)

그리하여 고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가정에서의 성별역할분업이 개선되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우며 가정에서의 평등에 기초하지 않는 정책은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을 가져올 수 없다. 즉 차별금지법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여성의 일차적 책임이 자녀양육이나, 남편의 내조, 노인 등의 보호와 가사노동에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고용평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은 가정에서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고 남녀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별역할분업을 유지시키는 사회통념과 법제도를 해체시키고 남녀가 공동으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노동권을 기본적 인권으로서 확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김엘립, 1993)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육아휴직제도가

성별역할분업의 변혁을 통하여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제기구의 문서에서 등장한 것은 국제연합(UN)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여 133개국이 채택한 [세계여성행동계획]에서이다. 즉 육아휴직제도는 세계여성행동계획에서 국제문서사상 처음으로 여성근로자만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을 위하여 남녀근로자에게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위치지워졌다. 그 이후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의 성별역할분업의 변혁과 특히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남녀 및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은 1979년에 유엔이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문서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모성보호차원에서 여성취업의 최대장애라 할 수 있는 육아와 직장의 양립문제를 개선하고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다(김애실, 1995). 그 후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시설과 함께 기혼여성의 주요한 취업지원정책의 과제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금까지 이 제도의 활용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여성보호조항에 더하여 여성의 장기간 육아휴직은 기업에게 여성의 고용으로 인한 부담을 증가시켜서 여성의 고용이 기피될 우려가 있고 여성의 육아의 책임자라는 성역할분업의식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를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남녀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시행될 것이 요청된다. 더욱이 육아휴직제도가 일정한 연령의 자녀를 가진 기혼취업여성에게만 적용되면 기업이 여성의 고용을 더욱 회피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할 가능성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을 모든 남녀 근로자에게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2.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

근대 사회이후 가사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논의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제안은 현체제하에서의 법제나 정책에서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부들의 이상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사노동 및 주부의 모습에 대한 정책적 반영이 구체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가족법 개정이후 가사노동과 주부 자신의 평가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서부터이다.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부담을 부부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사노동에 만 전념하던 주부의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혼이라는 상황에서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기를 인정해주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배우자 사망시 주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 법안을 새롭게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가운데 가족법에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 작업은 다른 하위 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세법이나 사회보장법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이 민법에서의 그것과 일관되지 않으며(최광, 1990; 전광석, 1995), 오히려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함으로써 주부들의 지위나 가정생활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부의 직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봉급을 얻게 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 가사노동을 사회보장체계에 포함되는 직업의 범주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신인령, 1983). 최근 서독 정부에서 비슷한 제안을 하였는데, 한 여론조사는 서독 주민의 86%가 주부의 연금수령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 제기된 법안에 의하면 모든 주부는 결혼생활에 대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인자격으로 사회보장을 위한 등록을 해야한다. 그들의 노동형태가 어떻든 모든 주부는 전액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결혼 도중에 가사노동자가 다른 수입이 없으면 다른 한편의 배우자는 결혼이 지속될 경우와 이혼이 성립될 경우 양자

에 대비한 계획에 보험금을 불입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서독정부당국은 이렇게 선언했다. “주부는 완전한 직업이며... 다른 어떤 것에 못지않는 생업이다... 경제학자들은 가정에서 행해지는 주부노동이 가족의 수입에 크게 기여하며 만약 그것이 직업적으로 행해진다면 막대한 비용이 가계에 소요될 것 이라는데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불공정한 면들은 주부가 ‘비노동’ 여성으로 간주되는 사실에서 기인된 결과로 지적된다. 그 제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보험금에 균거를 두기 때문에 그리고 주부는 고용자도 없고 봉급도 없기 때문에 의료보장을 제외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남편의 연금에 달려있다. 그녀가 과부가 되고 62세를 넘으면 남편이 벌어놓은 연금의 오직 82.5%만 받는다. 만약 이혼을 했다면 결혼기간이 20년을 초과하고 남편이 그녀를 부양해왔거나 부양할 것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조금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대개의 여성의 경우처럼 아내가 가정밖에서 노동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할 당시에 그녀 자신의 연금과 남편 연금의 절반 중에서 많은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한다. 두가지 일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사실은 정부는 남성과 여성의 독신으로 살아왔을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결혼에서 이익을 얻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일과 가족의 이중적인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을 지원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이 방법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노동책임과 가족책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고려되는데, 예를 들어 융통성있는 노동스케줄, 부모 유급휴가 등이 그것이다(문숙재 외, 1994). 이러한 정책들이 존재함으로써 가사노동은 주부가 전담하는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가정내에서 보다 평등한 노동분담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 쉬워진다고 논의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일정범위내에서 그들 노동일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선택하게 하는 유동시간표(flex-time), 두 명

의 노동자가 하나의 직위를 공유하는 직업공유제(job-sharing), 그리고 자녀양육문제에 대해 남녀 및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공유하는 부모의 유급휴가제도는 또다른 형태의 가사노동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1995년 12월 30일 입법화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명시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란 헌법이 천명한 남녀평등원칙을 확인하고 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기본법 제 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에서는 가사노동가치의 평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화하였으며(제 26조), 영유아보육(제 23조)과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제 24조) 등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지원정책을 명시화하였다. 더욱이 동법의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에서 가사노동가치평가에 관한 정책과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V. 가사노동 정책의 방향

1. 가사노동 정책의 전제조건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과 직장일에 적절히 참여시키기 위하여 가사노동은 여성의 전담업무라는 생각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 홍보와 교육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육아나 가사와 같은 무임금노동을 수량화하고 가치화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인정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회보장이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적 지위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즉 여성의 가정내 노동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하여 가족법, 세법, 사회보장법 등의 법체계내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수량화작업과 가치화하기 위한 노력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이중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사노동의 지원정책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사노동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을 조화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고려한 노동스케줄을 개발하는 동시에, 육아나 가사와 같은 무임금 가사노동이 여성의 전담업무라는 생각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 조세정책,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재평가하고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일관성있게 체계화시킨다. 이러한 여성의 무임금노동을 수량화하고 가치화하기 위한 노력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킴으로써, 여성들의 지위를 개선시키는데 기여하며, 가정밖에서 임금노동을 찾고자 노력하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정치, 경제, 사회 등 여타 부문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집권정당의 정치적 성향, 사회일반의 이념적 성향, 산업구조, 인구구조, 성평등 의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가족정책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가족상과 여성노동정책에서 과제로 삼고 있는 여성노동의 개발 의지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여성이 가정과 일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서 한가지를 어쩔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상황 모두, 또는 한가지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가사노동정책의 체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가사노동 개념 자체와 관련지어서, 그 가치와 평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가치인정의 문제는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그 노동의 선택으로 발생하는 상실임금과 노동에 투입한 시간가치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이러한 이론적인 방법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문적인 성과가 실제 법 적용 상에 연결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더욱이 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전환을 모색하는 방안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④ 가사노동의 담당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

가 있다. 일반적인 인식이나 정책에서의 인식이 가사노동을 하는 주체는 여성, 특히 가정주부로 국한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가사노동을 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 즉 남편, 아내, 자녀들, 기타 가족원들이 함께 분담하고 있는 일이며, 만일 분담하지 않고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가족간의 가사노동분담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평등과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원들의 평등한 노동분담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소외된 계층, 즉 여성들의 공적영역으로의 배제를 복지의 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담당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여기서 제시하는 가사노동정책의 체계내에서는 소외된 여성의 지위와 관련시켜 여성 전체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가사노동 정책의 분석틀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노동정책에 대한 일관된 정책의지나 시행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가사노동정책을 연구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나 모형 개발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정책이나 여성노동정책의 체계내에서 가사노동의 정책적인 의미를 제안해 볼때, 그 기본틀은 다음 <그림 1>의 가설적인 모형과 같이 설정된다.

① 가사노동 정책의 배경

가사노동은 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무노동, 여성의 일, 사적노동이라는 사고로 일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그것을 전담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여성들의 지위나 역할에도 큰 영향을 주어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역할을 고정시키게 된다. 이는 여성들의 시장노동 참가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가정과 일이라는 갈등적인 상황을 가중시키게 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여성만이 전담하는 단순하고 잡다

한 일이 아니라 진정한 노동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개별 가정안에서의 사적노동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공적인 관심과 주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식변화에 장애와 전통을 겪는 가사노동의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쟁점중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표에 따른 전략과 방법에 의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가사노동 정책의 범위

가사노동에 대한 정치화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실정법에 반영함으로써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가사노동자의 역할이나 가사노동이 행해지는 가정의 위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가사노동정책은 가족정책과 여성노동정책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다. 가족의 봉고저지와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가족정책과 개별적인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파악되는 노동정책을 모두 포함한다.

③ 가사노동 정책의 지향

가사노동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일을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한 사람에게 겪는 이중부담을 해결하여 가족원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현실적으로는 여성들, 특히 가정내 남아있는 전업주부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가 직접적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외의 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공세권(1996). 가정의 본질과 정책적 접근. 한국 가정관리학회 제 19차 학술대회자료집. 3-18.
- 2) 김애실(1995). 가족관련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삶의 질 선진화와 가족정책. 가족정책토론회 자료집. 61-69.
- 3) 김엘림(1993). 여성과 노동복지관계법.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8. 창작과 비평사.
- 4) 김정선(1992). 여성학에서의 재생산 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김한주(1995). 가사노동의 가치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 정당한 가사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통론 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가사노동정책의 배경

- 가사노동의 의식
- 가사노동의 가치
- 공적 특성
- 가족과 일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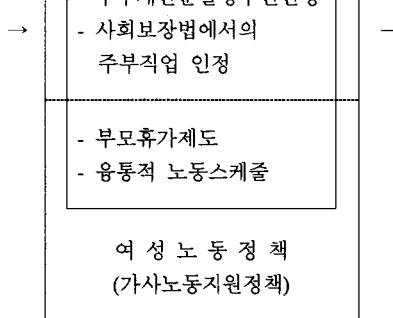
가사노동정책의 평가

가족정책 (가사노동평가정책)

-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인정
- 사회보장법에서의 주부직업 인정

가사노동정책의 방향

- 가족의 인정
- 여성복지 증진
- 가족과 일의 조화



〈그림 1〉 가사노동 정책의 가설적 모델

- 6) 김혜경(1985). 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여성해방론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7)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85-302.
- 8) _____ · 정영금(1991). 주부의 사고 발생시 손해 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31-150.
- 9) _____ · 김순미 · 정순희(1994).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서울:학지사.
- 10) _____ · 윤소영(1996). 가사노동의 사적특성과 공적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3). 199-210.
- 11) 박병호(1995). 가족정책의 방향. *삶의 질 선진화와 가족정책*. 가족정책토론회 자료집. 1-9.
- 12) 손덕수(1985).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과 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47-293.
- 13) 송혜림(199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서구 산업 사회와 한국에 있어서 사회정치적 관점들.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16차 학술대회 자료집*.
- 14) 신인령(1983). 한국 법제상 여성의 불평등. *여성학*. 서울:아대출판부.
- 15) 전광석(1995). 가족과 사회보장법. *삶의 질 선진화와 가족정책*. 가족정책토론회 자료집. 71-100.
- 16) 정영금(1989).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7) 최 광(1990). 세법과 성평등.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와 세제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정무제2장관실.
- 18) 한국여성개발원(1990). 남녀근로자 임금구조에 관한 연구.
- 19) _____ (1992). *한국여성관계법령집*. 1992 연구보고서 200-3.
- 20) 허 영(1983). 헌법과 가족법. *법률연구(연세대)* 3. 415-437.
- 21) Benston, M.(1978). 신인령 역(1983). 여성해방의 정치경제학.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스트럴 · 재거 편저. 서울:풀빛. 311-321.
- 22) Bryant, W. K.(1991). *Economics of Housewifery. Consumer Economics & Housing*. Cornell University. 1-42.
- 23) Cowan, R. S.(1987). Women's Work, Housework, and History: The Historical Roots of Inequality in Work-Force Participation. *Families and Work*. 164-177.
- 24) Duncan, J. S.(1982). From Container of Women to Status Symbol: the Impact of Social Structure on the Meaning of the House. *Housing and Identity*. Holmes & Meier Publishers.
- 25) Ferree, M. M.(1983). Housework: Rethinking the Costs and Benefits. *Families, Politics, and Public policy*. New York & London: Longman. 148-167.
- 26) Lopata, H. Z.(1993). The Interweave of Public and Private: Women's Challenge to American Socie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76-190.
- 27) Milton, M. H. & J. L. Block(1983). *What is a wife worth?*.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New York).
- 28) Rettig, K. D.(1987). Household Production: beyond the economic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141-156.
- 29) Scott, A. C.(1978). 신인령 역(1983). 가사노동의 가치.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스트렐 · 재거 편저. 서울:풀빛. 389-395.
- 30) Thompson, P. J.(1988). *Home Economics and Feminism*. Home Economics Publishing Collective UPEI.
- 31) Turnaturi, G.(1987). 한국여성개발원 역(1989).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전문주부의 탄생과 여성소비자. 여성과 국가. 앤쇼우스터 사춘 편저. 한국여성개발원. 257-280.
- 32) Vogel, L.(1983). 이효재 역(1988).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논쟁의 역사.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서울:까치. 227-245.